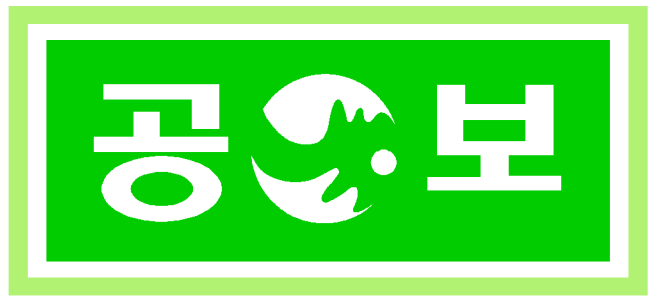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## 제 1093 호 2017. 11. 16. (목)

### 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40호[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] ..... 2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18호[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21호선)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] ·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19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2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12

#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231호[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4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232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1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233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박천동



2017년 11월 16일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10호

**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**

제1조(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복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, 제19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각각 “행정안전부”로 하고, 제9조, 제21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

제2조(「울산광역시 복구 채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복구 채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1항, 제85조제1항, 제141조, 제150조제2항, 제158조, 제160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21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하며, [별표 4]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울산광역시 복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울산광역시 복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**부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제정이유

- 「정부조직법」 일부개정(17.7.26. 공포·시행)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안전행정부(장관)를 행정안전부(장관)으로 개정
- 행정자치부(장관)를 행정안전부(장관)으로 개정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218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21호선)사업 조성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2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복구(도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21호선)사업

나. 명 칭 : 도시계획시설(오도밸리로2공구:송정IC~화봉2지구)사업 개설공사

#### 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·송정동일원

#### 3. 사업개요

(당초) 대로2-21호선(L=1.5Km, B=30m, A=97,097㎡)

(변경) 대로2-21호선(L=1.5Km, B=30m, A=98,160㎡)

####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가.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

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#### 5. 사업기간

(당초) 2009. 05. 14. ~ 2017. 08. 31.

(변경) 2009. 05. 14. ~ 2018. 03. 31.

#### 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

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#### 7. 열람기간 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#### 8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

#### 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,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도시과(☎052-241-79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토 지 조 서

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

원권 번호	지 번		지 목		지 적 (㎡)	편입면적(㎡)		소 유 자			관 계 인			비고
	당초	변경	당초	변경		당초	변경	당초	조영	경명	주 소	성명	주 소	
1	302-2	302-2	담	담	919	919	919	울산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	301-1	301-1	담	담	101	101	101	울산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3	1289-33	1289-33	구	구	317	317	317	국	국토해양부					
4	42-1	42-1	담	담	1,067	1,067	1,067	울산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5	산45-1	산45-1	임	임	4,419	4,419	4,419	밀양박씨송정 분송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6	산43-4	산43-4	임	임	11,920	11,920	11,920	울산 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7	54-2	54-2	담	담	1	1	1	울산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8	산42-4	산42-4	임	임	539	539	539	이수*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9	산42-3	산42-3	임	임	290	290	290	심선* 외 2인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0	산40-1	산40-1	임	임	5,073	5,073	5,073	곽성이씨부정 공파백중문화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1	1283-3	1283-3	도	도	10	10	10	국	국토해양부					
12	68	68	도	도	206	206	206	국	농림수산 식품부					
13	67-9	67-9	담	담	847	847	847	곽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4	1284-1	1284-1	구	구	629	629	629	국	국토해양부					
15	산35-3	산35-3	임	임	5,115	5,115	5,115	곽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6	산38-1	산38-1	임	임	562	562	562	박일* 외 1인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7	산37-1	산37-1	임	임	6,327	6,327	6,327	국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8	1298-5	1298-5	도	도	136	136	136	국	국토해양부					
19	1286-1	1286-1	구	구	91	91	91	국	국토해양부					
20	41-2	41-2	담	담	211	211	211	이병*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1	산45-4	산45-4	임	임	235	235	235	밀양박씨송정 분송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2	산46-2	산46-2	임	임	910	910	910	정동* 외 2인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3	산46-1	산46-1	임	임	878	878	878	울산광역시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4	산43-8	산43-8	임	임	1,778	1,778	1,778	박경* 외 3인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
## 토 지 조 서

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

일련 번호	시 번		지 목		지 적 (㎡)		취입면적(㎡)			소 유 자			관 개 인			비고			
	단초	변경	단초	변경	단초	변경	단초	변경	남 성	조 영	변 성	경 영	주 소	성 명	주 소		권 리 관 계		
25	신40-4	신40-4	임	임	904	904	904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백중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26	70-3	70-3	임	임	356	356	356						이수*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27	69	69	담	담	680	680	680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28	70-4	70-4	임	임	15	15	15						이수*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29	1284-6	1284-6	구	구	28	28	28						국	국도해양부					
30	신35-14	신35-14	임	임	220	220	220						학성이씨사정 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1	산35-5	산35-5	임	임	45	45	45						학성이씨사정 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2	71-1	71-1	임	임	70	70	70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3	71-2	71-2	임	임	62	62	62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4	1284-5	1284-5	구	구	18	18	18						국	국도해양부					
35	신35-13	신35-13	임	임	437	437	437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6	산35-12	산35-12		임	임	709	709	709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
37	산37-2	산37-2	임	임	22	22	22						국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8	산36-5	산36-5	임	임	609	609	609						국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39	산36-1	산36-1	임	임	2,317	2,317	2,317						국	한국토지 주말공사					
40		41-1		담	204		71						이병*	부산 동래구 운전동707 령 키615-805					편입
41		1289-15		구	246		8						국 (국도교통부)						편입
42		산35-1		임	527,049		137						학성이씨부정 공파문화	울산 북구 회봉동 72					편입
회봉동 소개						49,073	49,289												

## 토 지 조 서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

일련 번호	지 번		지 목		지 적 (㎡)		편입면적(㎡)		소 유 자				관 계 인			비고
	당초	변경	당초	변경	당초	변경	당초	변경	소유 종류	주 소	소유 종류	주 소	성명	주 소	연 계	
1	1104-58	1104-58	전	전	893	893	893		국	국토해양부	국토해양부					
2	69-1	69-1	답	답	335	335	335		전행*	울산 북구 송정동 148-2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3	1101-1	1101-1	도	도	84	84	84		국	국토해양부	국토해양부					
4	62-1	62-1	답	답	1,079	1,079	1,079		진행*	울산 중구 송정동 148-2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5	산33-5	산33-5	임	임	6,006	6,006	6,006		구경박씨서운 공파중회	경남 김해시 이방동 1046-8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6	42-1	42-1	답	답	1,721	1,721	1,721		이등* 외 1인	울산 남구 신정동 525-13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7	1099-1	1099-1	구	구	707	707	707		국	국토해양부	국토해양부					
8	산22-5	산22-5	임	임	3,683	3,683	3,683		구경박씨덕걸 문화	울산 북구 화동동 449-10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9	산31-2	산31-2	임	임	9,398	9,398	9,398		심문*	울산 북구 송정동 31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0	산30-4	산30-4	임	임	2,403	2,403	2,403		박장*	울산 동구 서 부동 257-30 현대패밀리2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1	산28-24	산28-24	임	임	7,722	7,722	7,722		홍순*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2	산28-11	산28-11	구	구	62	62	62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3	19-4	19-4	구	구	982	982	982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4	19 3	19 3	답	답	212	212	212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5	1094 81	1094 81	도	도	384	384	384		국	국토해양부	국토해양부					
16	1094-80	1094-80	도	도	371	371	371		국	국토해양부	국토해양부					
17	21-1	21-1	답	답	209	209	209		홍순*	울산 북구 송정동 109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8	20-1	20-1	답	답	891	891	891		장성*	울산 유주구 농소면 장평 리 5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19	17-4	17-4	답	답	354	354	354		권중*	울산 중구 서부동 464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0	17-3	17-3	구	구	30	30	30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1	13-8	13-8	대	대	216	216	216		차순*	울산 북구 송정동 13-1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2	14-4	14-4	답	답	1,991	1,991	1,991		김광*	서울 영등포 구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3	11-10	11-10	전	전	9	9	9		차권*	울산 북구 송정동 231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24	68-4	68-4	답	답	104	104	104		김병*	울산 북구 송정동 38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

토 지 조 서																		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																		
일련 번호	지 번		지 목		지 적		면적(㎡)		소 유 지						관 계 인		비고	
	당조	변경	당조	변경	당조	변경	당조	변경	당 상	조 명	주 소	본 심	경 명	주 소	성 명	주 소		관 계
25	68-3	68-3	답	답	11	11	11		귀동*		울산 북구 송정동 38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26	1119-1	1119-1	도	도	38	38	38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27	1119-2	1119-2	노	노	8	8	8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28	1102	1102	구	구	354	354	354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29	63-3	63-3	답	답	80	80	80		김동*		울산 북구 송정동 38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0	63-1	63-1	답	답	303	303	303		김동*		울산 북구 송정동 38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1	산22-17	산22-17	임	임	77	77	77		고령박씨덕걸문회		울산 북구 회봉동449-10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2	산22-16	산22-16	임	임	80	80	80		고령박씨덕걸문회		울산 북구 회봉동449-10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3	산22-15	산22-15	임	임	1,063	1,063	1,063		고령박씨덕걸문회		울산 북구 회봉동449-10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4	산22-7	산22-7	임	임	187	187	187		고령박씨덕걸문회		울산 북구 회봉동449-10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5	산22-3	산22-3	구	구	60	60	60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36	산33-8	산33-8	임	임	665	665	665		고령박씨사육공비중회		경남 김해시 어방동1046-8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37	산22-18	산22-18	구	구	92	92	92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38	산22-9	산22-9	구	구	141	141	141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39	산22-8	산22-8	구	구	6	6	6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40	1099-2	1099-2	구	구	12	12	12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41	1099-7	1099-7	구	구	47	47	47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42	1099-6	1099-6	구	구	11	11	11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43	1099-5	1099-5	구	구	20	20	20		국		국토해양부		국토해양부					
44	44-2	44-2	권	권	69	69	69		이순*		울산 중구 송정동 39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45	44-1	44-1	권	권	289	289	289		이순*		울산 중구 송정동 39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46	산31-8	산31-8	임	임	1,269	1,269	1,269		심분*		울산 북구 송정동 316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47	산28-22	산28-22	임	임	106	106	106		홍순*		울산 북구 송정동 23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48	산28-21	산28-21	임	임	408	408	408		홍순*		울산 북구 송정동 23		한국토지주택공사					



### 토 지 조 서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

일련 번호	지 번		지 목		지 적 (㎡)	편입면적(㎡)			소 유 자					관 계 인			비고
	당초	변경	당초	변경		당초	변경	합계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계		
49	산20-10	산20-10	구	구	305	305	305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0	산28-23	산28-23	구	구	17	17	17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1	산28-3	산28-3	임	임	99	99	99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2	18-4	18-4	구	구	113	113	113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3	18-13	18-13	구	구	20	20	20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4	17-1	17-1	답	답	1,415	1,415	1,415		장천래 외 2인	울산 북구 송정동 137-3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5	18-3	18-3	답	답	14	14	14		울산농지개발 조합	울산 중구 학성동 431-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6	16	16	대	대	218	218	218		홍근*	울산 울주군 농소면창평리 74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7	14-2	14-2	답	답	178	178	178		홍광*	울산 중구 송정동 16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8	14 1	14 1	대	대	252	252	252		미순*	울산 북구 송정동 14-1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59	8-2	8-2	대	대	2	2	2		한국토지주택 공사	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정 자동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60	8 3	8 3	대	대	69	69	69		한국토지주택 공사	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정 자동217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61	9-1	9-1	전	전	23	23	23		홍근*	울산 울주군 농소면창평리 74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62	11 9	11 9	전	전	57	57	57		치관*	울산 북구 송정동 231	한국토지 주택공사						
63		산22	임		63,081		84				구경백씨덕결 문화 외2인	울산 북구 화 양동 449-10					편입
64		산31	임		14,718		317				심규*	울산 남구 모 수로 409번길 20, 107동501					편입
65		산28-1	임		11,248		433				홍순*	울산 북구 송정동 23					편입
66		산28-8	임		13		13				홍순*	울산 북구 송정동 23					편입
송정동 소계						48,024	48,871										
총 계						97,097	98,160				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19호

#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96-12(상안동) 외 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석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1. 1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행정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신안동 957-1 외 1필지(신안동959-1)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96-12(신안동)	2017-11-16	동대 마을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2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-3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26(호계동)	2017-11-16	동대산 인근중앙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9-17	
3	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동 324-15 외 2필지(신진동324-31, 신진동 354-50)	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5(신진동)	2017-11-16	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의식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0-5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8길 10(연암동)	2017-11-16	고려 중졸항 때 이곳 바위에서 송소리운 흰 얼음이 수놓은듯 피어나 백암임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기됨. 현재도 탑중동 등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5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8-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길 26-1(연암동)	2017-11-16	고려 중졸항 때 이곳 바위에서 송소리운 흰 얼음이 수놓은듯 피어나 백암임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기됨. 현재도 탑중동 등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6	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979-4	울산광역시 북구 차월1길 10-1(장평동)	2017-11-16	기존 자연마을인 차월마을에 의식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광교지구 87B 7-1L	울산광역시 북구 광초16길 6-7(진장동)	2017-11-16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광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8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14	울산광역시 북구 광초1길 3-5(시례동)	2017-11-16	기존 자연마을인 광초마을에 의식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9	울산광역시 북구 신린동 456	울산광역시 북구 산암로 1440(신린동)	2017-11-16	울산의 산암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	
10	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1026-4	울산광역시 북구 산암로 1278-2(장평동)	2017-11-16	울산의 산암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6-18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-220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5(신천동) 외 3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.u.go.kr](http://www.bukg.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iuso.go.kr](http://www.i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1. 16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5	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24-15, 신전동 324-31	2017-11-16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8길 10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0-5	2017-11-16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길 26-1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8-2	2017-11-16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창좌1길 3-5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14	2017-11-16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 1231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#### 1. 개정이유

-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조례 제8조2호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용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(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) 3. ~ 5. (생 략)	제8조(이용 제한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 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#### 3. 근거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

#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.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 
(전화번호 : 052-241-7292, 팩스번호 : 052-241-7299)

## 6. 참고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##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 중 “시각장애인 안내견”을 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”으로 한다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용 제한) 구정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( <u>시각장애인 안내견 제외</u> ) 3. ~ 5. (생 략)	제8조(이용 제한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</u> 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-1232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-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
- 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
- 도시개발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 구축

**2. 주요내용**

- 과 신설 : 여성가족과
- 담당신설 : 건축주택과 건축관리
- 복지지원과(생활보장) 재배치 : 복지지원과 → 사회복지과
- 동복지허브 신설 : 권역형 2개소(농소3동, 송정동)
  - 기설치 유형변경 : 농소1동(권역형 → 기본형)

**3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**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홍보실

-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6조제1항 중 “복지지원과, 사회복지과, 창조경제과, 농수산과, 환경위생과, 환경미화과”를 “복지지원과, 사회복지과, 여성가족과, 창조경제과, 농수산과, 환경위생과, 환경미화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복지연계, 통합조사, 생활보장, 자활고용, 의료보장, 복지서비스 조정·연계, 자원봉사, 긴급복지, 주거복지”를 “복지연계, 통합조사, 복지서비스 조정·연계, 자원봉사, 긴급복지, 주거복지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2.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생활보장, 자활고용, 의료보장 등에 관한 사무

제6조제2항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노인복지, 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장애인복지, 출산장려”를 “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출산장려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, 사회복지과, 창조경제과, 농수산과, 환경위생과, 환경미화과를 둔다.</p> <p>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복지연계, 통합조사, <u>생활보장, 자활고용, 의료보장, 복지서비스</u> 조정·연계, 자원봉사, 긴급복지,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. 노인복지, <u>여성아동청소년, 보육, 장애인복지, 출산장려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3. ~ 10. (생 략)</p>	<p>제6조(복지경제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여성가족과, 창조경제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----- <u>복지서비스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생활보장, 자활고용, 의료보장</u> 등에 관한 사무</p> <p>3. <u>여성아동청소년, 보육</u> ----- -----</p> <p>4. ~ 11. (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

근거법규
------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233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16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**1. 개정이유**

- 2017년 하반기 추가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
-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정원 증원 : 11명(566명 → 577명)
- 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 **【별표 3】**
  - 총 계 : 566명 → 577명(증 11명)
  - 일반직 계 : 564명 → 575명(증 11명)
    - 5급 : 증 1명(33명 → 34명), 6급 이하 : 증 10명(526명 → 536명)

**3. 근거법규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**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: 따로 붙임.**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홍보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 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66명이며”를 “577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1호 중 “553명”을 “564명”으로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3]

##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동
총 계	577	-			
정 무 직 계	1	-			
구청장	1	1	-	-	-
일 반 직 계	575	-			
3급	1	1	-	-	-
4급	4	3	-	1	-
5급	34	21	2	3	8
6급 이하 계	536	-			
별 정 직 계	1	-			
6급 상당 이하 계	1	-			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<u>566명</u> 이며, 다음과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53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577명</u> 이며, ----- -----. 1. ----- : <u>564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
#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				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
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과	회 직 기	속 관	동		
총 계	<u>566</u>	-						총 계
정무직 계	1	-						정무직 계
구청장	1	1					구청장	
일반직 계	<u>564</u>	-						일반직 계
3급	1	1					3급	
4급	4	3		1			4급	
5급	<u>33</u>	<u>20</u>	2	3	8		5급	
6급이하 계	<u>526</u>	-						6급이하 계
별정직 계	1	-						별정직 계
6급상당 이하계	1	-						6급상당 이하계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입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**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**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